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5월 30일
- 나. 발 의 자: 박현우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현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영등포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회공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회공헌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회공헌인증,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최근 개인주의의 심화, 경제 침체, 세대·계층·성별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연대감 및 공동체 의식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개인,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 내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조문 해석의 일관성 및 명료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장려 및 활동여건 조성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사회공헌시책)는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홍보 등 규정하여 사회공헌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구체화함.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회공헌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임.
- 안 제9조(인증 사후관리)는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비용 등의 지원)는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1조(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는 사회공헌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우수 공헌자 인증 및 포상, 활동지원센터 설치 등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사회공헌인증 및 사회공헌주간 운영은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회공헌시책 추진 및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율적 연대와 사회기여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박현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0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박현우, 최인순, 이순우
임헌호, 정선희 의원
(5인)

1. 제안이유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영등포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회공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사회공헌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사회공헌인증,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아.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구청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회공헌주간) 구청장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 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공헌인증)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영등포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9조(인증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비용 등의 지원)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제11조(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등포구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
5. 사회공헌 관련 사업 연계 지원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